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 검토보고

### 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9조 5,342억 8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33조 5,835억 8천 8백만원
- 실제수납액 : 32조 6,437억 3천 1백만원
- 결손처분액 : 1,114억 8천 5백만원
- 미수납액 : 8,283억 7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7.2%(전년도 97.4%)임.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b>합 계</b>	<b>29,534,284</b>	<b>33,583,588</b>	<b>32,643,731</b>	<b>93,943</b>	<b>17,542</b>	<b>828,371</b>	<b>110.5</b>	<b>97.2</b>
지방세수입	23,095,574	27,089,200	26,163,797	93,819	17,292	814,292	113.3	96.6
지방세	23,095,574	27,089,200	26,163,797	93,819	17,292	814,292	113.3	96.6
보통세	20,708,171	24,163,114	23,833,022	12,937	-	317,155	115.1	98.6
취득세	6,204,612	5,920,635	5,871,174	270	-	49,190	94.6	99.2
주민세	616,633	737,423	728,680	901	-	7,843	118.2	98.8
재산세	3,827,592	3,964,234	3,918,885	755	-	44,595	102.4	98.9
자동차세	1,216,532	1,080,800	1,025,804	1,021	-	53,975	84.3	94.9
레저세	29,891	105,142	105,142	-	-	-	351.8	100.0
담배소비세	571,531	588,594	588,594	-	-	-	103.0	100.0
지방소비세	2,189,240	2,760,286	2,760,286	-	-	-	126.1	100.0
지방소득세	6,052,140	9,006,000	8,834,457	9,991	-	161,551	146.0	98.1
목적세	2,177,403	2,147,627	2,115,205	669	-	31,753	97.1	98.5
지역자원시설세	309,683	328,023	325,408	58	-	2,257	105.1	99.2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지방교육세	1,867,720	1,819,605	1,789,798	611	-	29,196	95.8	98.4
지난년도수입	210,000	778,459	215,570	93,819	17,292	465,384	102.7	27.7
지난년도수입	210,000	778,459	215,570	93,819	17,292	465,384	102.7	27.7
세외수입	296,810	354,899	340,446	124	250	14,079	114.7	95.9
경상적세외수입	126,914	175,394	175,088	-	-	307	138.0	99.8
재산임대수입	8,483	9,145	9,115	-	-	30	107.5	99.7
공유재산임대료	8,483	9,145	9,115	-	-	30	107.5	99.7
사용료수입	1,194	1,464	1,188	-	-	276	99.5	81.1
기타사용료	1,194	1,464	1,188	-	-	276	99.5	81.1
수수료수입	832	1,176	1,175	-	-	1	141.2	99.9
증지수입	832	1,176	1,175	-	-	1	141.2	99.9
이자수입	116,604	163,609	163,609	-	-	0	140.3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111,978	157,853	157,853	-	-	0	141.0	100.0
기타이자수입	4,427	5,756	5,756	-	-	0	13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169,149	176,511	162,645	124	250	13,492	96.2	92.1
재산매각수입	52,518	56,125	54,781	-	-	1,344	104.3	97.6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2,518	56,125	54,780	-	-	1,345	104.3	104.3
불용품매각대금	0	1	1	-	-	-	0	100.0
기타수입	106,778	107,489	107,445	-	-	44	100.6	100.0
채납처분수입	16	9	9	-	-	0	56.3	100.0
위약금	232	133	116	-	-	17	50.0	87.2
그외수입	106,531	107,348	107,320	-	-	28	100.7	100.0
지난년도수입	9,852	12,896	419	124	250	12,103	4.3	3.2
지난년도수입	9,852	12,896	419	124	250	12,103	4.3	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46	2,994	2,713	-	-	281	363.7	90.6
변상금	746	2,994	2,713	-	-	281	363.7	90.6
변상금	746	2,994	2,713	-	-	281	363.7	90.6
보조금	1,539	1,526	1,526	-	-	0	99.2	100.0
국고보조금등	1,539	1,526	1,526	-	-	0	99.2	100.0
국고보조금등	1,539	1,526	1,526	-	-	0	99.2	100.0
국고보조금	1,539	1,526	1,526	-	-	0	99.2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40,361	6,137,962	6,137,962	-	-	0	100.0	100.0
보전수입등	6,140,361	6,137,962	6,137,962	-	-	0	100.0	100.0
잉여금	5,871,202	5,871,202	5,871,202	-	-	0	100.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순세계잉여금	1,681,959	1,681,959	1,681,959	-	-	0	100.0	100.0
법정잉여금	4,189,243	4,189,243	4,189,243	-	-	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269,159	266,760	266,760	-	-	0	99.1	1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	35	35	-	-	0	106.1	100.0
전년도 이월사업비	269,126	266,726	266,726	-	-	0	99.1	10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3조 1,960억 3천만원

○ 예산증감 : 2,616억 3천 1백만원

※ 추경예산 2,598억 2천 5백만원, 사고이월 2억 2천 9백만원, 예비비 15억 7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4,576억 6천 2백만원

○ 지출액 : 3조 4,318억 5천 3백만원

○ 이월액 : 49억 9천만원

○ 집행잔액 : 208억 1천 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6%(전년도 1.4%)가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지출잔액 206억 1천 3백만원,

낙찰차액 1억 7천 2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천 3백만원임

###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 예산	3,457,662	3,431,853	4,990	20,818	0.6
일반예산계	794,085	774,282	-	19,803	2.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	772,377	-	19,665	2.5
기본경비	2,043	1,905	-	138	6.8
재무활동	15,499	15,498	-	1	0.0
사업예산계	2,648,078	2,642,073	4,990	1,015	0.0
일반사업비	43,802	37,797	4,990	1,015	2.3
타기관 지원	2,604,276	2,604,276	-	-	0.0
자치구 재정보전금	1,959,075	1,959,075	-	-	0.0
시세 징수교부금	640,196	640,196	-	-	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005	5,005	-	-	0.0

< 2021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b>재 무 국</b>	<b>3,457,661,904</b>	<b>3,431,853,036</b>	<b>4,990,425</b>	<b>20,818,443</b>	<b>0.6</b>
<b>재 무 과</b>	<b>795,532,814</b>	<b>775,619,414</b>	-	<b>19,913,400</b>	<b>2.5</b>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7,988	742,327	-	65,661	8.1
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68,806	266,314	-	2,492	0.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11,013	206,648	-	4,365	2.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22,036	314,095	-	7,941	2.5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20,216	-	6,821	25.2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56,240	-	44,760	44.3
서울계약관리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40,306	139,260	-	1,046	0.7
기본경비	1,580,356	1,465,043	-	115,313	7.3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342	772,376,666	-	19,664,676	2.5
국고보조금 반환	32,930	32,605	-	325	1.0
<b>재산관리과</b>	<b>27,544,217</b>	<b>27,401,776</b>	-	<b>142,441</b>	<b>0.5</b>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10,400,000	10,310,710	-	89,290	0.9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07,250	1,458,849	-	48,401	3.2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6,933	123,375	-	3,558	2.8
기본경비	47,366	46,382	-	984	2.1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62,668	15,462,459	-	209	0.0
<b>계약심사과</b>	<b>103,873</b>	<b>97,725</b>	-	<b>6,148</b>	<b>5.9</b>
계약심사 업무추진	35,250	29,110	-	6,140	17.4
기본경비	68,623	68,615	-	8	0.0
<b>세 제 과</b>	<b>1,966,065,752</b>	<b>1,965,973,464</b>	-	<b>92,288</b>	<b>0.0</b>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520	135,738	-	42,782	24.0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18,507	-	643	3.4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	-	1,200	100.0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46,356	1,533,119	-	13,237	0.9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112,350	99,200	-	13,150	11.7
기본경비	124,354	103,094	-	21,260	17.1
재정보전금	1,959,074,763	1,959,074,763	-	-	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5,005,428	5,005,428	-	-	0.0
국고보조금 반환	3,631	3,614	-	17	0.5
<b>세 무 과</b>	<b>659,937,053</b>	<b>654,558,268</b>	<b>4,990,425</b>	<b>388,360</b>	<b>0.1</b>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장수 납세조합 보조	395,204	372,407	-	22,797	5.8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69,319	725,313	-	144,006	16.6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151	131,550	-	172,601	56.7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2,700	284,768	-	7,932	2.7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99,984	-	16	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49,637	1,949,637	-	-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21,108	1,901,700	-	19,408	1.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425	7,700,000	4,990,425	-	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132,000	132,000	-	-	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1,472	919,872	-	21,600	2.3
기본경비	144,987	144,987	-	-	0.0
시세 징수교부금	640,196,050	640,196,050	-	-	0.0
<b>38세금징수과</b>	<b>8,478,195</b>	<b>8,202,390</b>	<b>-</b>	<b>275,805</b>	<b>3.3</b>
고액 체납시세 징수	2,022,857	2,011,157	-	11,700	0.6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018	1,965,655	-	263,363	11.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4,148,754	4,148,754	-	-	0.0
기본경비	77,566	76,824	-	742	1.0

#### 가. 예산 이용: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전용

- 현원 증가 및 표준지급가액 인상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공무직근로자보수 ⇒ 성과상여금) 사업에서 3억 7천 6백만원,
  -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공무직근로자보수 ⇒ 직급보조비) 사업에서 13억 8천만원,
  - 총 2건, 17억 5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다. 예산 이체: 해당사항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징수교부금 ⇒ 기타보상금) 사업에서 2억 6천 9백만원,
  - 고액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고액 체납시

세 징수」(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사업에서 3천 6백만원

- 총 2건, 3억 5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 다. 예비비 사용

-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판결금 지급으로 4억 4천 3백만원, 파산선고 소송의 예납금 납부로 10억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으로 1억 3천 5백만원 총 3건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7천 8백만원 전액 지출하였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건, 49억 9천만원

- 명사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총 1건, 49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2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조사' 1개 사업에 15억 2천 6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 불임 참조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 2022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06,433,780 $m^2$  75조 6,094억 4천 6백만원,
- 건물 13,276,714 $m^2$  8조 9,881억 3천 5백만원,
- 기타 14,708,553건 50조 5,650억 8백만원,
- 총 135조 1,625억 8천 9백만원 상당의 금액

### 〈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4,220,088	13,798,324	2,855,823	135,162,589	
행정 재산	계	102,677,792	6,599,724	2,544,150	106,733,366
	공용재산	11,797,455	742,381	897,669	11,642,167
	공공용재산	79,570,299	5,531,167	1,148,469	83,952,997
	기업용재산	9,560,529	223,673	410,621	9,373,582
	보존재산	1,749,508	102,502	87,391	1,764,620
일반재산	21,542,296	1,703,580	311,673	22,934,204	
건설중인재산	-	5,495,020	-	5,495,020	



## II. 검토의견

### 1. 세입결산

〈 (참고)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 시세입 결산 : **55조 5,717억원**(예산현액 대비 103.9%)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 결손액 <sup>㉣</sup>	미수납액 ㉤-㉥-㉦	비율	
						㉤/㉠	㉤/㉡
2022	53조 4,688	56조 8,224	55조 5,717	1,146	1조 1,361	103.9%	97.8%
일반회계	38조 3,196	41조 7,514	40조 7,141	1,135	9,238	106.2%	97.5%
특별회계	15조 1,492	15조 710	14조 8,576	11	2,123	98.1%	98.6%
2021	47조 7,591	53조 8,875	52조 8,591	821	9,462	110.7%	98.1%
증감	5조 7,097	2조 9,349	2조 7,126	325	1,899	△6.8%P	△0.3%P

○ 일반회계 : **40조 7,141억원 수납**(수납률 106.2%)

- 지방세 : 26조 1,638억원(예산 23조 955억원 대비 113.3%)
- 세외수입 : 1조 3,366억원(예산 1조 8,883억원 대비 70.8%)
- 지방교부세 : 2,683억원(예산 2,669억원 대비 100.5%)
- 보조금 : 6조 3,955억원(예산 6조 5,205억원 대비 98.1%)
- 보전수입 등: 6조 5,499억원(예산 6조 5,484억원 대비 100.0%)

○ 특별회계 : **14조 8,576억원 징수**(예산현액 15조 1,492억원의 98.1%)

- 공기업 : 1조 8,035억원(예산 1조 9,021억원 대비 94.8%)
- 기타 : 13조 541억원(예산 13조 2,471억원 대비 98.5%)

## 가. 재무국 세입 총괄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9조 5,343억원) 대비 10.5%(3조 1,094억원) 초과 수납된 32조 6,437억원으로, 전년 결산(30조 162억원) 대비 8.8%(2조 6,275억원) 증가한 수준임.

※ 징수결정액(33조 5,836억원) 대비 2.8%(△9,399억원) 부족 징수

※ (참고)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24조 973억원) 대비 24.6%(5조 9,189억원) 초과 수납된 30조 162억원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9,534,284	32,643,731	3,109,447	110.5	30,016,196	2,627,535	108.8
지방세수입	23,095,574	26,163,797	3,068,223	113.3	26,001,189	162,608	100.6
세외수입	296,810	340,446	43,636	114.7	195,352	145,094	174.3
보조금	1,539	1,526	-13	99.2	2,030	-504	75.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140,361	6,137,962	-2,399	100.0	3,817,625	2,320,337	160.8

○ 세입(장별) 예산현액 대비 수납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3.3%(3조 682억원) 초과 징수, 세외수입은 14.7%(436억원) 초과 징수, 보조금은 0.8%(△1천 3백만원) 부족 징수,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0% 수준 징수 되어, 총 세입예산 대비 10.5%(3조 1,094억원)가 초과징수 된 반면,

-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현황을 보면 1조원 가까이(2.8%, △9,398억 5천 7백만원) 세수가 부족 징수되었는바, 징수결정된 세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또는 부실채권의 경우 정리보류 처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지방세수입 결산(26조 1,638억원)**

- 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3조 956억원) 대비 13.3% (3조 682억원) 초과 징수된 26조 1,638억원으로 전년 결산(26조 12억원\*) 대비 0.6%(1,626억원) 증가한 수준임.

\*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 예산현액(20조 237억원) 대비 29.9%(5조 9,775억원) 초과 징수(26조 12억원).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b>합 계</b>	<b>230,956</b>	<b>261,638</b>	<b>30,682</b>	<b>113.3</b>	<b>260,012</b>	<b>1,626</b>	<b>0.6</b>
취 득 세	62,046	58,712	-3,334	94.6	80,100	-21,388	-26.7
재 산 세	38,276	39,189	913	102.4	36,461	2,728	7.5
지 방 소 비 세	21,892	27,603	5,711	126.1	20,776	6,827	32.9
지 방 소 득 세	60,521	88,344	27,823	146.0	74,273	14,071	18.9
기 타 세 목	48,221	47,790	-431	99.1	48,402	-612	-1.3

- 지방세수입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결산비율은 평균 17.4%의 수준으로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역대 최고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2021회계연도 초과세입\*에 비해 2022회계연도에는 13.3%(3조 682억원)의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의 경우 29.9%(5조 9,775억원)의 초과세입 발생

**< 최근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초과세입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2	23조 956억원 (전년대비 15.3%증)	23조 956억원	26조 1,638억원	3조 682억원	113.3
2021	20조 237억원 (전년대비 2.4%증)	20조 237억원	26조 12억원	5조 9,775억원	129.9
2020	19조 5,524억원 (전년대비 7.3%증)	19조 5,524억원	23조 3,930억원	3조 8,406억원	119.6
2019	18조 2,213억원 (전년대비 6.6%증)	18조 2,213억원	20조 4,581억원	2조 2,368억원	112.3
2018	17조 965억원 (전년대비 9.9%증)	17조 965억원	19조 1,033억원	2조 68억원	111.7

- 이는 필요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산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로써,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며, 매년 순세계 잉여금 등 과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방세수입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23년 1회	3조 2,549 억원	△44.6	2조 3,945억원	8,604억원
'22년 편성	5조 8,712억원	69.4	5조 3,401억원	5,311억원
'21년 편성	3조 4,653억원	50.4	2조 9,298억원	5,355억원
'20년 편성	2조 3,044억원	7.6	1조 8,407억원	6,224억원
'19년 편성	2조 1,419억원	△11.9	1조 6,176억원	6,000억원

① 취득세

- 취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조 2,046억원) 대비 5.4%(△3,334억원) 부족 징수된 5조 8,712억원으로, 전년 결산(8조 100억원) 대비 26.7% (△2조 1,388억원) 부족 징수되었음.

※ 2021회계연도 취득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5조 589억원) 대비 58.3%(2조 9,511억원) 초과 징수(8조 100억원).

**< 취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62,046	58,712	-3,334	94.6	80,100	-21,388	-26.7
부 동 산	55,326	51,146	-4,180	92.4	72,448	-21,302	-29.4
차 량	6,720	7,566	846	112.6	7,652	-86	-1.1

**<최근 5년 간 취득세 징수액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1,917	55,908	74,707	80,100	58,712
(증가율)	-2.0	7.7	33.6	7.2	-26.7
부동산	45,395	49,372	67,230	72,448	51,146
(증가율)	-4.9	8.8	36.2	7.8	-29.4
차량	6,523	6,536	7,477	7,652	7,566
(증가율)	25.5	0.2	14.4	2.4	-1.1

- 2022회계연도 취득세 세입은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액 중 가장 큰 비중 (26.9%, 6조 2,046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입결손\* 발생 규모 (△3,334억원) 또한 가장 크게 발생한 세목으로서,

\* 지방세수입 중 세입결손 세목(2): 취득세(△3,334억원), 자동차세(△1,907억원)

- 결산 규모는, 총 세입의 22.4%(전년 30.8%)를 차지하여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18.0%)을 보이고 있음.

- 세부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대비 29.4%(△2조 1388억원) 부족 징수되었고, 취득세 차량분은 전년 대비 1.1%(△86억원) 부족 징수 되어, 취득세 세수 결손은 주로 부동산 관련 세입에서 발생하였음.

○ 재무국은 본 세목의 부족징수 사유로,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추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의 위축 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 전년 대비 34.2% 감소한 부동산 거래량\*과,

**<부동산 취득세 신고 현황>** (단위 : 건)

신고건수	합계	주택	건축물	토지
2022년	192,053	115,689	63,449	12,915
2021년	291,848	198,269	78,731	14,848
증감건수 (증감률)	△99,795 (-34.2%)	△82,580 (-41.7%)	△15,282 (-19.4%)	△1,933 (-13.0%)

-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 및,

\* (부동산 가격) 202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3%(전국 △9.0%) 하락한 10억 6천 8백만원(2022.12. 기준),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 (△8.8%)과 서북권(△9.1%)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 주택 공급 실적 감소\* 및 주택 미분양의 증가\*\* 등을 들고 있음.

\* (주택 공급) 수도권 인허가 실적 하락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22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 △34.5% 감소(서울 △48.7% 감소))

\*\* (주택 미분양) '22년 68,107호로 전년 17,710호 대비 284% 증가, 수도권 1,509호 → 11,035호, 서울 54호 → 953호로 큰 폭 증가

○ 다만, 2022년 부동산 취득세 예산 편성(5조 5,326억원) 규모는, 당시 부동산 거래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속적인 주택 거래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여 전년 예산(4조 3,919억원) 대비 26.0%(1조 1,406억원)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 결과적으로, 2022년 부동산 취득세 세입결산 실적은 예산 대비 7.6% (△3,334억원), 전년 세입규모(7조 2,448억원) 대비 29.4%(2조 1,302억원) 부족 징수되었음.

- 이는 부동산 취득세 세수추계에 큰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으로, 취득세 세수추계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 〈연도별 취득세(부동산) 예산 추계 적용지표〉

연도	유형별 점유비	거래량 증감률	과표 신장율	징수율	비고
2019	최근3년 평균	'04~'08년 평균*	(주택)최근2년평균 (건물)최근3년평균 (토지)최근3년평균	최근5년 평균	*'18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20	최근2년 평균	'08~'09년 평균*	최근2년평균	-	*'19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1	최근2년 평균	최근 3년 평균	최근2년평균	-	*'20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2	최근2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최근2년평균	-	*'21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 나아가,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세입예산(4조 5,408억원) 규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세입예산(5조 5,326억원) 대비 17.9% ( $\Delta 9,918$ 억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22년 결산액(5조 5,326억원)과 비교하여 22.7%( $\Delta 1$ 조 3,304억원) 부족 징수를 추계한 것으로,

〈 2023년도 취득세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액 (A)	2022년		2022 예산 대비		2022 결산대비	
		예 산 (B)	결 산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52,219	62,046	66,278	-9,827	-15.8	-14,059	-21.2
부 동 산	45,408	55,326	58,712	-9,918	-17.9	-13,304	-22.7
차 량	6,811	6,720	7,566	91	1.4	-755	-10.0

- 부동산 취득세는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음으로써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입액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 최근 5년 부동산 취득세 세입 추이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2019결산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예산
결산(예산)액	49,372	67,230	72,448	58,712	45,408
전년대비 증감액	3,977	17,858	5,218	-13,736	-13,304
증감률	8.8	36.2	7.8	-19.0	-22.7

- 다만, 2023년 서울특별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 규모를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부동산 거래 동향을 반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금년 5개월 거래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87.4% 증가된 수준임.

\*\* 금번 회기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액(7,696억원),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3조 2,549억원) 등에 대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서울특별시 부동산 거래향 동향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1,099	819	1,426	1,741	1,729	1,065	645	713	608	559	728	835
2023년	1,417	2,458	2,982	3,185	2,729	-	-	-	-	-	-	-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최근 3년간 취득세(부동산·차량) 예산 대비 결산현황 〉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 = B - A	수납률 (B/A)
2022	62,046	62,046	58,712	-3,334	94.6
2021	50,589	50,589	80,100	29,511	158.3
2020	46,330	46,330	74,707	28,377	161.2

② 지방소득세

- 2022회계연도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조 521억원) 대비 146.0%(2조 7,823억원) 수납된 8조 8,345억원으로 전년 결산(7조 4,273억원)\* 대비 18.9%(1조 4,071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지방세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세목으로 지방세수입의 33.8%를 점유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5조 1,964억원) 대비 42.9%(2조 2,309억원) 초과 징수(7조 4,273억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 소득분과,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부동산 등의 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60,522	88,344	27,822	146.0	74,273	14,071	18.9
종합소득	7,844	10,139	2,295	129.3	8,517	1,622	19.0
양도소득	6,838	12,616	5,778	184.5	14,478	-1,862	-12.9
법인소득	16,782	30,584	13,802	182.2	20,963	9,621	45.9
특별징수	29,058	35,005	5,947	120.5	30,315	4,690	15.5

- 지방소득세는 당초 지방세수입 예산 편성액 중 취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26.2%, 6조 204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결산 결과 모든 세세목에서 초과징수 되어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규모(8조 8,345억원)의 세입이 징수 되었으며, 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 또한 가장 크게 발생(2조 7,823억원)한 세목임.
- 다만, 전년도 세입실적과 비교할 때 세세목 중 ‘양도소득분’에서는 전년 대비 12.9%(1,862억원) 세입이 감소하였는바, 취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나머지 세세목에서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법인실적 개선, 임금 상승 등의 사유로 지방소득세 초과세입이 발생(46.0%, 2조 7,822억원) 하였음.

< 지방소득세 초과징수 사유 >

- (종합소득분) '21년 귀속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및 신고 인원 증가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조원) : ('20귀속) 248.8 → ('21귀속) 299.5 <+20.4%>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949.5만명) 전년(802.1만명) 대비 18.4% 증가
- (양도소득분) 금리인상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 감소
- (법인소득분)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58.2%>
  - 수출 증가율: ('20년) △5.5% → ('21년) 25.7% → ('22년) 6.1%

- (특별징수분) 상용근로자 수 증가 및 월평균 임금 상승

·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은 592만원으로 6.1%(+34만원) 증가

- 지방소득세 추계방식을 보면 정부 국세 예산안을 기초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지방세 중 서울시 점유비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매년 전년도 결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최근 5년 평균 25% 수준을 초과하는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 취지에 맞는 독자적인 추계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2	60,522	60,522	88,344	27,822	146.0
2021	51,964	51,964	74,273	22,309	142.9
2020	54,330	54,330	61,076	6,746	112.4
2019	52,385	52,385	58,058	5,673	110.8
2018	48,483	48,483	54,942	6,459	113.3

③ 재산세(특별시분, 도시지역분)

- 재산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8,276억원) 대비 2.4%(913억원) 초과 수납된 3조 9,189억원으로 전년(3조 6,461억원) 대비 7.5%(2,728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지방세수입의 15.0%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1회계연도 재산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3조 3,945억원) 대비 7.4%(2,516억원) 초과 징수(3조 6,461억원).

< 재산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38,276	39,189	913	102.4	36,461	2,728	7.5
특 별 시 분	18,189	18,862	673	103.7	17,185	1,677	9.8
도 시 지 역 분	20,087	20,327	240	101.2	19,276	1,051	5.5

- 본 재산세 중 ‘특별시분’(공동재산세) 세입(1조 8,189억원)은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본래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서울시 세입과목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재무국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비\*’(공동재산세전출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경비

<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교부 현황\_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교부액	1,929,595	1,751,350	1,577,150	1,300,009	1,165,213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 중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 등은, 그동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거래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재산세 세입은 매년 확장세를 유지해 왔음.

< 2022년 공시가격 인상을 현황 >

(단위 : %)

연도	주택			건물	토지
	평균	단독	공동		
2022	12.09	9.95	14.22	5.4	11.54
2021	14.87	9.83	19.91	1.37	11.54
2020	10.83	6.92	14.73	2.82	8.25

- 다만, 2023년 세입예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여, 금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는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세목으로써 관련 교육청 예산 조정까지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세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것임.

<2023회계연도 제1회 재산세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769,600	△3.1%
재산세	4,163,279	3,552,079	△641,200	△15.4%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13,104	△20,900	△6.3%
지방교육세	1,814,948	1,707,448	△107,500	△5.9%

※ 시세로서, 재산세는 세입 전액을 자치구로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특별시분)\*와 시 세입원인 '재산세(도시지역분)'로 구분되며, 이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액의 20%로 산정되는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이 적고, 시가 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안정적 세입 운영에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2	38,276	38,276	39,189	913	102.4
2021	33,946	33,946	36,461	2,516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 기본법 제9조).

④ 자동차세

○ 2022회계연도 자동차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2,165억원) 대비 15.7%(1,907억원) 부족 징수된 1조 258억원으로 전년(1조 1,641억원) 대비 11.9%(1,383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전년에 이어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한 세목으로, 지방세수입의 3.9%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1회계연도 자동차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1조 1,863억원) 대비 1.9%(222억원) 부족 징수(1조 1,641억원).

< 자동차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12,165	10,258	-1,907	84.3	11,641	-1,383	-11.9
소 유 분	6,164	6,260	96	101.6	6,241	19	0.3
주 행 분	6,001	3,998	-2,003	66.6	5,400	-1,402	-26.0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동차세 보전분 및 유가보조금 보전분

- 소유분 자동차세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사유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하여 1.6%(96억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나,

< 2018년 ~ 2022년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 >

(단위 : 대, 억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등록대수 (증감률)	3,193,351 (+0.5%)	3,176,743 (+0.6%)	3,157,361 (+0.9%)	3,124,157 (0.0%)	3,124,651 (+0.3%)
자동차세 (증감률)	6,260 (+0.3%)	6,241 (+2.3%)	6,102 (+1.3%)	6,022 (+1.4%)	5,940 (+0.3%)

- 주행분 자동차세에서는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예산 대비 33.4%(△2,003 억원)가 부족 징수되어 세수결손이 발생되었는바, 유류세 인하 및 이를 연장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4.30	'23.5.1 ~ 8.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4.18.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 한편,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2022회계연도 자동차세 세액공제 규모는 282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자동차세 연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선납전세액(A)	선납세액(B)	감면추계액(A-B)
2021	1,258,193	297,716	270,517	27,199
2022	1,270,734	307,844	279,735	28,109
증가율	1.0%	3.4%	3.4%	3.3%

※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다만, 2020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10% 세액 공제 규모를 2023년부터 차등 축소하여 2025년 이후에는 3%의 세액 공제율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세수 증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127만 건을 초과하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⑥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 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는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10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세 세율(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이하 생략)

- 이는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간 세액이 약 40만원\* 수준인 점과 비교할 때, 전기차 등은 연간 10만원(정액)에 그치고 있는바, 차량의 가격이나 성능 및 5만 8천대를 초과하고 있는 등록 대수를 감안하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 자동차세 산정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가장 많은 약 40.0% 수준으로 등록된 승용자동차(1,600cc초과 2,000cc 미만) 기준

※ 행정안전부(관계부처 합동)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계획(2021년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자동차세 세율 인상 언급 없음).

〈 서울시 자동차 연료별 등록 현황 〉

(2022년 10월 기준, 단위: 대)

차종별	계	휘발유	경유	LPG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기타
계	3,190,108	1,653,322	1,062,773	235,912	55,335	8,442	164,102	2,860	7,362
승용차	96,841	1,207	73,066	12,506	943	7,784	50	2,839	140
승합차	10,734	22	9,744	146	26	-	-	21	1,264
화물차	326,425	2,798	290,800	22,718	4,787	368	5	-	5,162
특수차	9,871	22	9,068	118	26	1	-	-	796

※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⑤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1,892억원) 대비 26.1%(5,711억원) 초과 수납된 2조 7,503억원으로 전년(2조 776억원) 대비 32.9%(6,827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10.6%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1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1조 8,243억원) 대비 13.9%(2,533억원) 초과 징수(2조 776억원).

<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21,892	27,603	5,711	126.1	20,776	6,827	32.9
소 비 지 출	6,112	7,224	1,112	118.2	6,104	1,120	18.3
취 득 세 보 전	7,525	9,674	2,149	128.6	8,058	1,616	20.1
전 환 사 업	8,255	10,705	2,450	129.7	6,614	4,091	61.9

-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수입 등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입과목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세율이 지속 인상\*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역별 안분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세목임.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율) 과세표준의 23.7%(2022년)

\*\*\*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 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

1.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2.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 <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율 >

연도	2010	2014	2019	2020	2022	2023
세율	6%p	11%p	15%p	21%p	23.7%p	25.3%p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13.8월)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 → 11%로 인상('14.3월)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19년 4%인상)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로 인상('20년 6%인상) → 23.7%('22년 2.7%인상) → 25.3%('23년 1.6%인상)

### < 지방소비세 세율 변동 경과 >

- **(도입)**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2010)
- **(확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14) 및 1·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19~'20, '22~'23)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2014)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6%p(5%→11%) 인상
    - \* 9억초과(4%), 9억이하(2%) → 9억초과(3%), 6~9억(2%), 6억이하(1%)
  - (2019, 2020)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1단계 재정보전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19년 4%p(11%→15%) 인상, '20년 6%p(15%→21%) 인상
  - (2022) 2단계 재정보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22년 2.7%p(21%→23.7%) 인상
  - (2023) 1.6%p(23.7%→25.3%) 인상

- 이에 따라 재무국은 초과세입 발생 원인으로 2022년도 세율인상(21%p → 23.7%p)과,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71조 2,046억원) 대비 14.6%(10조 4,220억원)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입(81조 6,266억원)\*의 증가를 들고 있음.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3.2.10.)

- 한편, 당초에는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의 일부를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고도, 추가적으로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등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1.12.7.)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는 최근 5년간 세율의 증가율이 115.5%(2018년 11% → 2022년 23.7%)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97.3%(1조 3,612억원) 인상에 머물게 되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정도에 비해 세입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결산 실적 >**

(단위 : 억 원, %)

지방소비세	연도별 현황					증가율
	2018 ①	2019	2020	2021	2022 ②	(②-①)/①
(세율)	(11%)	(15%)	(21%)	(21%)	(23.7%)	(115.5%)
예산액	12,127	17,948	20,414	18,243	21,892	80.5%
결산액	13,991	19,283	19,428	20,776	27,603	97.3%
수납률(%)	115.4	107.4	95.2	113.9	126.1	-

**< 부가가치세 세입결산 실적 >**

(단위 : 조 원/%)

부가가치세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결산액	70.0	70.8	64.9	71.2	81.6	-

※ 출처: e-나라지표(index.go.kr) 내 국세수입실적(부가가치세)

- 전환사업비로의 선공제 기간의 추가적 연장 등 정부의 지방재정권 취지에 반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재무국의 대응 내역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소비세 개요 (2022회계연도 기준)>**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납부('22년 납입관리자 : 전라남도지사)

**① 소비지출 비율(5%p) 분**

-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 전국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
- 안분방법
  - 1) (소비지수) 지방소비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 2) (가중치) 시·도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② 취득세 감면 보전(6%p) 분**

- '13.12.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면된 취득세 보전 성격
- 안분방법
  - 1) (취득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98/100)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전(2/100)
    - \* 시·도의 5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2) (지방교육세) 취득세 감소분에 총당하는 보전액의 10%
  - 3)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각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

**③ 전환사업 비용 등 보전(12.7%p) 분**

-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전, 잔여분은 시도별 소비지수 등 고려 안분
- 안분방법
  - 1) (전환사업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로 배분
  - 2) (재정조정분) 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교육청에 별도로 보전
  - 3) (잔여분) 전환사업분,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은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2.7%p는 시도 60%, 기군구 40% 할당)하여 시·도에 안분

⑥ 레저세

○ 레저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99억원) 대비 251.5%(7억 5천 2백만원) 초과 징수된 1,051억원으로, 전년(44억원) 대비 2,288.6%(1,007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0.4%를 차지하여, 세입징수 규모가 가장 적은 세목임.

※ 2021회계연도 레저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427억원) 대비 89.7%(△383억원) 부족 징수(44억원).

< 레저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299	1,051	752	351.5	44	1,007	2,288.6
경 마	162	727	565	14.7	34	693	2,038.2
경 룬	110	240	130	4.5	7	233	3,328.6
경 정	27	84	57	7.9	3	81	2,700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를 세율로 하여 징수하는 세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경기 중단의 장기화와 장외발매소 폐쇄 등으로 2020년부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음.

- 이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방침 시행(2022.4.18.) 등으로 경마·경륜·경정장이나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로 경기가 재개되어 세입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세입(1,282억원)의 82.0%(1,051억원) 수준까지 회복된 것임(경마의 경우 86.5% 수준까지 회복).

<최근 5년간 레저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2	299	299	1,051	752	351.5
2021	427	427	44	-383	10.3
2020	1,249	1,249	229	-1,020	18.2
2019	1,310	1,310	1,282	-28	97.9
2018	1,321	1,321	1,352	31	102.3

- 한편, 세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주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경륜·경정법」 시행(2021.8.1.)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제도변경에 따른 레저세 안분계산 신고 등 납세지와 관련한 세제 운영에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 2023회계연도 레저세 세입예산 편성액: 전년 예산(298억 9천 1백만원) 대비 255.1%(762억 4천 2백만원) 증액된 1,061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⑦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100억원) 대비 2.7%(56억원) 초과 수납된 2,156억원으로 전년(2,358억원) 대비 8.6%(△202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입 결산: 예산현액(2,010억원) 대비 37.7%(512억원) 징수(2,358억원)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지난년도시세	2,100	2,156	56	102.7	2,358	-202	-8.6

- 재무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현장징수 제약 및 조사 부족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자치구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예산액)를 초과달성(2.7%, 56억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2,100억원)은, 직전 5년 평균 세입예산(2,229억 9백만원)에 비해 5.8%(△129억 9백만원) 수준 적게 편성된 것으로,
- 세입실적을 전년(2,357억 5천 3백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8.6%(201억 8천 3백만원) 감소하였는바, 결국 2022년 세입목표 초과 달성한 것은 예산(징수목표액) 편성 규모를 예년에 비해 적게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수납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직전 5년 실적 대비 결산 실적 비교 >**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022	직전5년 예산 평균	2021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A)	210,000	222,909	201,005	222,078	221,567	236,597	233,297
징수결정액(B)	778,459	1,029,701	699,543	834,347	1,030,407	1,256,009	1,328,201
수납액	215,570	211,287	235,753	184,629	226,319	200,327	209,405
정리보류액	97,505	250,204	49,702	245,339	314,213	383,785	257,982
다음연도 이월액	464,384	568,211	414,088	404,379	489,875	671,898	860,814
수납률(C/A)	102.7	94.8	117.3	83.1	102.1	84.7	89.8
징수율(C/B)	27.7	20.5	33.7	22.1	22.0	15.9	15.8

- 또한, 세입목표(예산액)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총 체납액인 ‘징수결정액’(7,784억 5천 9백만원) 대비 27.0%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 앞서 본 예산 대비 세입실적을 높게 하려는 자의적인 세입예산 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향후 징수결정액의 적정 수준으로의 세입목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입은 2천 1백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수납되고 있는 반면, 징수결정액(총체납액)은 크게 감소(2017년 1조 3천 3백억원 → 2022년 7천 8백억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크게 증가(2017년 15.8% → 2022년 33.7%)하고 있음.
- 이는 한해 평균 2천 3백억원 수준의 정리보류\* 증가로, 징수결정액(총 체납액)의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2022.1.28.)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완성 정리”)
- 정리보류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 중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절차를 일지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정리보류 처분된 건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징수된 실적을 보면, 매년 정리보류액 규모 대비 13.9%(1,511억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정리보류 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정리보류액(A)	1,091,226	97,505	50,357	245,339	314,190	383,835
징수액(B)	151,147	28,214	39,025	23,832	32,604	27,472
징수율(B/A)	13.9	28.9	77.5	9.7	10.4	7.2

- 따라서 정리보류 처분 후에도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 기초적인 관리를 꾸준히 이행하여, 압류대상 재산 등이 있음에도 시효소멸되는 부당한 세무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체계의 마련과,
- 정리보류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담당 세무공무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리보류 절차에 지방세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체납 지방세의 세세목별 결산 실적을 보면, 총 체납액(징수결정액) 중 지방소득세가 62.4%(4,856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징수율(12.6%)은 가장 낮게 나타나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하겠음.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778,459	51,093	16,256	485,638	99,806	1	35,833	37,974	6,248	45,610
(점유율)	100.00	6.56	2.09	62.39	12.82	0	4.60	4.88	0.80	5.86
수납액	215,570	22,449	5,818	60,942	60,525	0	17,293	19,834	2,484	26,225
정리보류액	97,505	5,812	1,820	79,888	4,705	0	1,463	1,365	273	2,179
미수납액	465,384	22,832	8,618	344,808	34,576	1	17,077	16,775	3,491	17,206
징수율	27.69	43.94	35.79	12.55	60.64	0.00	48.26	52.23	39.76	57.50
정리보류율	12.53	11.38	11.20	16.45	4.71	0.00	4.08	3.59	4.37	4.78
미수납율	59.78	44.69	53.01	71.00	34.64	100.00	47.66	44.17	55.87	37.72

**<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	2018년
시세소계	예산	210,000	201,005	222,078	221,567	236,597
	징수결정액	778,459	699,543	834,347	1,030,407	1,256,009
	수납액	215,570	235,753	184,629	226,319	200,327
	정리보류액	97,505	49,701	245,339	314,213	383,785
	다음연도이월액	465,384	414,088	404,379	489,875	671,898
	징수율	27.69	33.70	22.13	21.96	15.95
취득세	징수결정액	51,093	55,307	55,176	75,234	81,385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	2018년
	수납액	22,449	24,322	7,330	22,141	7,808
	정리보류액	5,812	6,215	20,149	17,927	25,433
	다음연도이월액	22,832	24,770	27,697	35,165	48,143
	징수율	43.94	43.98	13.28	29.43	9.59
주민세	징수결정액	16,256	15,383	15,834	16,782	17,320
	수납액	5,818	5,395	5,682	5,965	6,001
	정리보류액	1,820	1,987	2,244	3,228	2,788
	다음연도이월액	8,618	8,001	7,907	7,589	8,532
	징수율	35.79	35.07	35.88	35.54	34.65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485,638	396,990	541,450	674,864	839,199
	수납액	60,942	74,634	54,796	58,684	59,038
	정리보류액	79,888	29,778	208,848	260,371	282,820
	다음연도이월액	344,808	292,578	277,806	355,809	497,341
	징수율	12.55	18.80	10.12	8.70	7.04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99,806	103,446	106,929	121,305	122,847
	수납액	60,525	62,061	62,443	69,934	67,061
	정리보류액	4,705	5,417	6,478	12,471	9,097
	다음연도이월액	34,576	35,967	38,008	38,900	46,689
	징수율	60.64	59.99	58.40	57.65	54.59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	1	1	1	12,848
	수납액	0	0	0	0	0
	정리보류액	0	0	0	0	12,847
	다음연도이월액	1	1	1	1	1
	징수율	0.00	0.00	0.00	0.00	0.00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35,833	37,115	30,032	40,567	60,091
	수납액	17,293	19,038	12,442	17,584	14,118
	정리보류액	1,463	1,721	1,760	7,626	22,543
	다음연도이월액	17,075	16,357	15,830	15,357	23,429
	징수율	48.26	51.29	41.43	43.35	23.49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결정액	37,974	35,726	32,381	38,643	48,255
	수납액	19,834	18,359	15,241	19,044	17,182
	정리보류액	1,365	1,548	1,524	4,617	11,278
	다음연도이월액	16,777	15,818	15,617	14,982	19,796
	징수율	52.22	51.39	47.07	49.28	35.61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결정액	6,248	6,633	6,427	7,956	8,357
	수납액	2,484	2,702	2,213	3,173	2,845
	정리보류액	273	375	343	893	908
	다음연도이월액	3,491	3,556	3,871	3,890	4,605
	징수율	39.76	40.74	34.43	39.88	34.04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45,610	48,943	46,116	55,056	65,707
	수납액	26,225	29,242	24,482	29,795	26,274
	정리보류액	2,179	2,660	3,993	7,079	16,071
	다음연도이월액	17,206	17,041	17,642	18,182	23,362
	징수율	57.50	60.12	53.09	54.12	39.99

※폐지되거나 변경된 세목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기준 세목으로 작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1,948백만원)을 보면,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2.6%(55억 7천만원) 증가하여, 포상금은 전년 대비 1.3%(2천 5백만원) 증가한 19억 4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 대비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가율)		
			증감액 (B-A)	증감률	계	시	자치구
2022	210,000	215,570	5,570	2.6	1,948 (1.3)	506 (△20.1)	1,442 (11.8)
2021	201,005	235,753	34,748	17.2	1,923 (12.4)	633 (39.1)	1,290 (2.7)
2020	222,078	184,628	-37,450	-16.9	1,711 (△16.5)	455 (△6.6)	1,256 (△19.6)
2019	221,567	226,319	4,752	2.1	2,049 (3.6)	487 (22.1)	1,562 (△1.0)
2018	236,597	200,326	-36,271	-15.3	1,977 (△3.9)	399 (△3.2)	1,578 (△4.1)

- 다만, 2022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액은 80% 이상의 수준을 자치구에서 징수해오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징수금액 외에도 징수 건수를 반영하여 징수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2	2,100	2,100	2,156	56	102.7
2021	2,010	2,010	2,358	348	117.3
2020	2,221	2,221	1,846	-375	83.1
2019	2,216	2,216	2,263	47	102.1
2018	2,366	2,366	2,003	-363	84.7

※ 2022년 징수 결정액(7,785억원) 대비 징수율은 27.69%(2,156억원)임.

## < 2022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세목	'22년		'22년 예산대비		'21년		'21년 실적대비	
	예산	실적	예산차액	진도율	예산	실적	실적차액	증감률
시 세 계	230,956	261,638	30,682	113.3	200,237	260,012	1,626	0.6
보 통 세	207,082	238,330	31,248	115.1	178,844	235,623	2,707	1.1
취 득 세	62,046	58,712	-3,334	94.6	50,589	80,100	-21,388	-26.7
부 동 산	55,326	51,146	-4,180	92.4	43,919	72,448	-21,302	-29.4
차 량	6,720	7,566	846	112.6	6,670	7,652	-86	-1.1
주 민 세	6,167	7,287	1,120	118.2	6,011	6,386	901	14.1
개 인 분	162	164	2	101.2	160	163	1	0.6
사 업 소 분	594	625	31	105.2	637	602	23	3.8
종 업 원 분	5,411	6,498	1,087	120.1	5,214	5,621	877	15.6
재 산 세	38,276	39,189	913	102.4	33,945	36,461	2,728	7.5
특 별 시 분	18,189	18,862	673	103.7	16,343	17,185	1,677	9.8
도 시 지 역 분	20,087	20,327	240	101.2	17,602	19,276	1,051	5.5
자 동 차 세	12,165	10,258	-1,907	84.3	11,863	11,641	-1,383	-11.9
소 유 분	6,164	6,260	96	101.6	6,151	6,241	19	0.3
주 행 분	6,001	3,998	-2,003	66.6	5,712	5,400	-1,402	-26.0
레 저 세	299	1,051	752	351.5	427	44	1,007	2,288.6
경 마	162	727	565	448.8	232	34	693	2,038.2
경 료	110	240	130	218.2	157	7	233	3,328.6
경 정	27	84	57	311.1	38	3	81	2,700.0
담배소비세	5,715	5,886	171	103.0	5,802	5,942	-56	-0.9
지방소비세	21,892	27,603	5,711	126.1	18,243	20,776	6,827	32.9
소 비 분	6,112	7,224	1,112	118.2	5,428	6,104	1,120	18.3
취 득 세 보 전	7,525	9,674	2,149	128.6	7,498	8,058	1,616	20.1
전 환 사 업	8,255	10,705	2,450	129.7	5,317	6,614	4,091	61.9
지방소득세	60,522	88,344	27,822	146.0	51,964	74,273	14,071	18.9
중 합 소 득	7,844	10,139	2,295	129.3	6,526	8,517	1,622	19.0
양 도 소 득	6,838	12,616	5,778	184.5	6,336	14,478	-1,862	-12.9
법 인 소 득	16,782	30,584	13,802	182.2	12,606	20,963	9,621	45.9
특 별 징 수	29,058	35,005	5,947	120.5	26,496	30,315	4,690	15.5
목 적 세	21,774	21,152	-622	97.1	19,383	22,031	-879	-4.0
지역자원시설세	3,097	3,254	157	105.1	3,048	3,161	93	2.9
지 방 교 육 세	18,677	17,898	-779	95.8	16,335	18,870	-972	-5.2
지난년도시세	2,100	2,156	56	102.7	2,010	2,358	-202	-8.6

## 다. 세외수입 결산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968억 1천만원) 대비 14.7%(436억 3천 6백만원) 초과 징수된 3,404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 결산액(1,953억 5천 2백만원) 대비 74.3%(1,450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2021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예산현액(2,539억원) 대비 23.1%(586억원) 부족 징수된 1,954억원으로 과다한 세입결손 발생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세외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세 외 수 입	296,810	340,446	43,636	114.7%	195,352	145,094	174.3%

※ 예산현액(2,968억 1천만원)은 전년(2,539억 3천만원) 대비 16.9%(428억 8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 징수결정액(3,548억 9천 9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93.9%로, 수납액(3,404억 4천 6백만원) 및 결손처분액(3억 7천 4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40억 7천 9백만원 규모임.

### 1) 세입결손 과목

○ 재무국 세외수입의 12개 세입과목 중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한 세입과목은 ‘체납처분수입’(56.3%)과, ‘위약금(50.0%)’ 및 ‘지난년도수입(4.3%)’ 3개 세입과목임.

**<세외수입 예산 대비 수납률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296,810	354,899	340,446	374	14,079	114.7	95.9
임시적세외수입	169,149	176,511	162,645	374	13,492	96.2	92.1
기타수입	106,778	107,489	107,445	-	44	100.6	100.0
체납처분수입	16	9	9	-	-	56.3	100.0
위약금	232	133	116	-	17	50.0	87.2
지난년도수입	9,852	12,896	419	374	12,103	4.3	3.2
지난년도수입	9,852	12,896	419	374	12,103	4.3	3.2

가) 체납처분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체납처분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천 6백원) 대비 56.3%(9백만원) 징수된 9백만원 수준임.
- 이 중 ‘체납처분수입’은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체납자로 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 세입 결손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현장 체납징수 활동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년과 같은 상황에서도, 2.8배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세입결손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체납처분수입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908	1,289	1,908	15,593	1,908	29,847	5,627	7,686	15,576	8,693
67.6%		817.2%		1564.3%		136.6%		56.3%	

나) 위약금

-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위약금 결산액은 예산현액(2억 3천 2백만원) 대비 50.0%(1억 1천 6백만원) 징수된 1억 1천 6백만원 수준임.
- 이 중 ‘위약금’은 공사 및 납품지연 배상금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세입 결손 발생 사유는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이 감소(21년 22건 → 22년 14건) 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부터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설명이며,
- 연도별 세입징수 실적 또한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이는데,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채권 확보가 곤란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처분 등을 통한 안정적 체납액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위약금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43,604	317,725	165,985	76,379	175,018	902,861	194,550	158,625	232,068	116,168
221.3%		46.0%		515.9%		81.5%		50.1%	

다)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98억 5천 2백만원) 대비 4.3%(4억 1천 9백만원) 징수된 수준으로 지나치게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은 재무국 소관 5개 과에서 발생한 세입과목으로, 소송계류(재무과), 납부 거부(재산관리과), 법인폐업(세제과),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세무과), 예측 곤란(38세금징수과)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납부거부, 예측곤란 등 세입결손 발생 사유는 세입 징수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체납 징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처분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체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년도수입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지난년도수입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055,525	3,657,809	1,976,322	1,386,763	7,066,455	5,312,232	7,389,224	8,169,613	9,852,471	418,748
346.5%		70.2%		75.2%		110.6%		4.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1 체납처분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224-06 위약금	1. 위약금 수입
		225	지난년도수입	
			225-01 지난년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2) 공공예금이자수입**

- 재무국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 세입과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1,119억 7천 8백만원) 대비 41.0%(458억 7천 5백만원) 초과 징수된 1,578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 결산액(430억 3천 9백만원) 대비 266.7%(1,148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 과목 중 가장 큰 규모(46.4%)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39,266,904	55,561,525	39,200,441	49,135,587	35,404,000	20,428,525	13,923,152	43,039,001	111,977,811	157,853,177
141.5%		125.3%		57.7%		309.1%		141.0%	

※ 2021회계연도 공공예금이자수입 결산: 예산현액(139억 2천 3백만원) 대비 309.1%(291억 1천 6백만원) 징수된 430억 3천 9백만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에 따라, 일반회계 공공·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정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정기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COFIX) 금리\*가 2022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2.12월 고점(4.34%)을 찍으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하여,

\* 2022년 12월 최고점(4.34%)

- 공금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정기예금(1개월/3개월/6개월) 및 기업MMDA(수시입출금성 예금) 상품들에 적극 예치하여 역대 최고 이자수입을 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금번 회기에 재산세 세입을 감액하는 등 부동산 정책등의 요인으로 세입전망이 유동적\*임을 감안하여, 2023년도 세입예산은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예치 보다는 단기성 예금 점유율을 높게 반영하여 편성하였는바,

\* 금번 회기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액(7,696억원),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3조 2,549억원) 등에 대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효율적인 유희자금의 운영과 세입예산의 증대를 위하여 금리 추이 등에 대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세입과목이라고 할 것임.

※ 2023회계연도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 편서액: 1,111억 3천 6백만원

### 3) 세입예산의 미편성·수납(불용품매각대금)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재무국 부서별 세외수입 발생 형태를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70만원)하였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미편성 수납>

(단위 : 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금	-	700,000	700,000	-

## 라. 보조금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결산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보조금 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5억 3천 9백 만원) 대비 100.0% 징수되었으며, 전년 결산액(20억 3천만원) 대비 24.2%(△4억 9천 1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결산액은 예산현액(6조 1,403억 6천 1백만원) 대비 100.0% 징수되었으며, 전년 결산액(3조 8,176억 2천 4백만원) 대비 60.8%(2조 3,227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2021회계연도) 초과세입 등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2022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함에 발생한 것임.

###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율	
				C/A	C/B
<b>합 계</b>	<b>6,141,900</b>	<b>6,139,488</b>	<b>6,139,488</b>	<b>100.0%</b>	<b>100.0%</b>
<b>보조금</b>	1,539	1,526	1,526	99.2%	100.0%
국고보조금등	1,539	1,526	1,526	99.2%	100.0%
국고보조금	1,539	1,526	1,526	99.2%	100.0%
<b>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b>	<b>6,140,361</b>	<b>6,137,962</b>	<b>6,137,962</b>	<b>100.0%</b>	<b>100.0%</b>
<b>잉여금</b>	5,871,202	5,871,202	5,871,202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1,681,959	1,681,959	1,681,959	100.0%	100.0%
법정잉여금	4,189,243	4,189,243	4,189,243	100.0%	100.0%
<b>전년도이월금</b>	269,159	266,760	266,760	99.1%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3	35	35	106.1%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269,126	266,726	266,726	99.1%	100.0%

### 1) 결산상 잉여금의 증가

- 재무국의 2021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5조 8,712억원으로 전년(3조 4,653억원) 대비 69.4%(2조 4,05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1조 6,820억원) 및 법정잉여금(4조 1,892억원)으로 세입 편성 되었음.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40,361	6,137,962	6,137,962	-	-	0	100.0	100.0
보전수입등	6,140,361	6,137,962	6,137,962	-	-	0	100.0	100.0
잉여금	5,871,202	5,871,202	5,871,202	-	-	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1,681,959	1,681,959	1,681,959	-	-	0	100.0	100.0
법정잉여금	4,189,243	4,189,243	4,189,243	-	-	0	100.0	100.0

- 주요 잉여금 증가 사유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주로 지방세 수입에서 발생한 초과세입 5조 3,382억원과 5,330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무국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상 잉여금 =(A)+(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2년 편성	5,871,202	69.4	5,338,155	533,047
‘21년 편성	3,465,276	50.4	2,929,780	535,496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622,437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99,989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64,011

-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함께 세출예산의 경우는 실소요예산의 편성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마.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 종합적으로,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10.5%(3조 1,094억원) 초과 수납된 32조 6,437억원으로, 전년 결산(30조 162억원) 대비 8.8% (2조 6,275억원) 증가한 수준이지만,
  - 부동산 취득세 세입결산 실적은 예산 대비 7.6%(△3,334억원), 전년 세입 규모(7조 2,448억원) 대비 29.4%(2조 1,302억원) 부족 징수되어 큰 세수 결손이 발생되었음.
  - 이는 부동산 취득세 세수추계에 큰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수추계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 반대로, 가장 큰 규모의 세입이 발생한 지방소득세는 예산현액(6조 521억원) 대비 146.0%(2조 7,823억원) 수납된 8조 8,345억원으로, 과다한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음.
  - 이는 국세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추계방식의 개발을 통하여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세입여건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2,003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바, 정부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세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세수보전 방안 마련 등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이양사무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나, 세율 인상에 비해 실제 세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4,576억 6천 2백만원) 대비 99.4%(3조 4,318억 5천 3백만원)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8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435억 4천 7백만원) 대비 52.2%(△227억 2천 9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2021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1,290억 5천 7백만원) 대비 98.6%(3조 852억 4천 5백만원) 집행, 불용 1.4%(435억 4천 7백만원)

- 다만,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 전출금(2조 6,042억 7천 6백만원(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법정 출연금))을 제외할 경우, 사업 예산현액(8,275억 7천 7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2.5%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불용률 2.2%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B/A)
합 계	3,457,662	3,431,853	4,990	20,818	99.4%
행정운영경비	794,085	774,282	-	19,803	97.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	772,377	-	19,665	97.5%
기 본 경 비	2,043	1,905	-	138	93.2%
재 무 활 동	15,499	15,498	-	1	100.0%
사 업 비	2,648,078	2,642,073	4,990	1,015	99.8%
일 반 사 업 비	43,802	37,797	4,990	1,015	86.3%
타 기 관 지 원	2,604,276	2,604,276	-	-	100.0%
자치구 재정보전금	1,959,075	1,959,075	-	-	100.0%
시세징수교부금	640,196	640,196	-	-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005	5,005	-	-	100.0%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결산액은 예산현액(7,920억 4천 1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2.5%(196억 6천 5백만원)

## 가.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 1) 예산의 전용

- 재무국(재무과)의 2022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2건에 17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2건, 17억 2천 9백만원) 대비 1.5%(2천 7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2022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율)	승인일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92,986	1,756	-	91,140	7,969 (8.7)	'22-03-29 (재무과)
		303-02 성과상여금	23,457	-	376	23,833	66 (0.3)	
2		204-02 직급보조비	19,675	-	1,380	21,055	76 (10.4)	'22-11-25 (재무과)

- 2022년 3월 예산전용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현원 증가 및 표준지급가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여 인력운영비 내 '공무직근로자 보수(101-03)' 예산에서 '성과상여금(303-02)'으로 3억 7천 6백만원(1건)을 전용하고,
  - 같은 해 11월 예산전용은 2022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인력운영비 내 '공무직근로자 보수(101-03)'에서 '직급보조비(204-02)'로 13억 8천만원(1건)을 전용하였음.

※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인건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두 번의 전용으로 17억 5천 6백만원을 감액편성 하고도 79억 6천 9백만원(8.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예산의 전용을 통해 증액된 두 사업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가 하면,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국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상여금(303-02)’ 6천 6백만원(0.3%), ‘직급보조비(204-02)’ 7천 6백만원(10.4%)

### 〈 기준인건비 내 편성목간 전용 〉

※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인건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 2) 예산의 변경사용

- 재무국 2022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3억 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1건, 256만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의 ‘포상금(303-01)’을 ‘기타 보상금(301-12)’로 예산 변경사용(2021.12.01.)

<2022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건			305,497	305,497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징수교부금 (308-02)	269,117	269,117		2022- 02-21	-	-	-
	기타 보상금 (301-12)	-		269,117		395,204*	372,407	22,797 (5.8)
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무관리비 (201-01)	1,423,100	36,380		2022- 12-26	1,386,720	1,382,481	4,239 (0.3)
	공공운영비 (201-02)	100,000		36,380		136,380	131,458	4,922 (3.6)

\*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26,087천원 증액 편성

< 예산의 변경사용 >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2022년 3월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 예산 변경사용은, 본 사업에 따라 민간 조합에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의 통계목으로 ‘징수교부금(308-02)’이 부적절하여, 같은 사업 안에 ‘기타 보상금(301-12)’을 신설하여 이를 계상하고 변경사용 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다만, 본 사업은 예산의 변경사용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고도 최종 5.8%(2,27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제31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7월)

○ 같은 해 12월 “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업 예산 변경사용은 우편요금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를 ‘공공운영비(201-02)’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 또한 3.6% (49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본 예산의 변경사용 또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예산 운영 형태로써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변경사용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나.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208억 1천 8백만원(예산 3조 4,576억 6천 2백만원 대비 0.6%)으로 전년(1.4%, 435억 4천 7백만원) 대비 109.2%(△227억 2천 9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재무국 사업별 통계목별 20% 또는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15개 사업의 22개 통계목에서 203억 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 집행잔액(435억 4천 7백만원)의 97.6% 수준임.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 (단위: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100.0%	코로나19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자제로 집행잔액 발생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27,037	6,821	25.2%	코로나로 인한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 지급 금액 감소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사무관리비	101,000	44,760	44.3%	코로나 특례(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등)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수의계약 건수 증가
기본경비	국내여비	167,300	78,301	46.8%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로 집행잔액 발생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29,163,753	2,659,136	0.5%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직보수	116,849,238	5,957,658	5.1%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1,139,932	7,969,487	8.7%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연금부담금	3,998,892	1,208,383	30.2%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국민건강보험금	3,486,890	626,593	18.0%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	2,514,860	1,101,809	43.8%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600	1,050	40.4%	코로나19로 인해 과업심의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개인별 참석수당 (대면 : 1인 당 100,000원 / 비대면 : 1인 당 50,000원)을 기존 예산 편성시보다 과소 집행하여 집행 잔액 발생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1,750	6,140	28.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감소 및 서면자문 진행으로 참석수당 미지급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29,020	41,491	32.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개 세무법정 미개최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세무공무원 정책 토론회	사무관리비	1,200	1,200	100.0%	지방세발전포럼 개최기간 및 참여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불용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사무관리비	6,000	4,150	69.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회의 축소 개최
	공공운영비	9,000	9,000	100.0%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구축 준공지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으로 미집행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69,319	144,006	16.6%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액과 계약액의 낙찰차액 발생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214,817	168,985	78.7%	ETAX/STAX에 문자(SMS) 본인인증이 2018년 도입 이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2022년 문자전송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무료 본인인증수단(간편인증앱, 행안부 제공)이 도입되어 문자 본인인증 비용이 절감되었음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무관리비	8,400	5,465	65.1%	코로나19 지속에 의해 세목별 개정세법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교육 책자 별도제작 없이 온라인 파일 형태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400	1,450	42.6%	기존 세외수입 고지서 사용으로 고지서를 미제작성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금	30,000	17,296	57.7%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수 저조에 따른 불용
	포상금	2,193,618	246,067	11.2%	시 및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

○ 특히 재무국의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96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서 203억 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체 불용액(208억 1천 8백만원)의 97.8%를 차지하고 있는바,

\* 인력운영비(통합편성)(재무과, 2.5%, 196억 6천 5백만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38세금징수과, 11.8%, 2억 6천 3백만원),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세무과, 56.7%, 1억 7천 3백만원),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세무과, 16.6%, 1억 4천 4백만원), 기본경비(재무과, 7.3%, 1억 1천 5백만원)

- 이러한 예산 운영은 긴급한 필요 사업에 적기 투입할 수 없게 하여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행태로, 서울특별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도한 불용 발생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예산 감액 조정 등 재무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1억원 이상 불용 사업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재 무 국	3,457,661,904	3,431,853,036	4,990,425	20,818,443	0.6%
재 무 과	795,532,814	775,619,414	-	19,913,400	2.5%
기본경비	1,580,356	1,465,043	-	115,313	7.3%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342	772,376,666	-	19,664,676	2.5%
재산관리과	27,544,217	27,401,776	-	142,441	0.5%
계약심사과	103,873	97,725	-	6,148	5.9%
세 제 과	1,966,065,752	1,965,973,464	-	92,288	0.0%
세 무 과	659,937,053	654,558,268	4,990,425	388,360	0.1%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69,319	725,313	-	144,006	16.6%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151	131,550	-	172,601	56.7%
38세금징수과	8,478,195	8,202,390	-	275,805	3.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018	1,965,655	-	263,363	11.8%

**다.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과다 불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7,920억원 중 196억 6천 5백만원(2.5%)을 불용처리 하였음.

\*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무기계약)근고자고용보험료부담금

※ 전년의 경우 예산현액 8,016억원 중 421억원(5.3%) 불용

- 인력운영비 불용액 196억 6천 5백만원 중 40.5%(79억 6천 9백만원)는 통계목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다음으로 30.3%(59억 5천 8백만원)는 ‘기타직보수’에서 발생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 불용발생 현황 > (단위 : 억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22			2021			2020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총 계	7,920	196	2.5%	8,016	421	5.3%	7,833	441	5.6%
보수	5,292	26	0.5%	5,391	214	4.0%	5,346	253	4.7%
기타직보수	1,168	59	5.1%	1,147	70	6.1%	1,051	26	2.5%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911	80	8.7%	1,046	135	12.9%	1,018	159	15.6%
직급보조비	211	0.7	0.4%	197	0.5	0.3%	197	2	1.0%
성과상여금	238	0.6	0.3%	235	2	1.1%	221	1	0.5%
연금부담금	40	12	30.2%						
국민건강보험금	35	6	18.0%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25	11	43.8%						

- 재무국은 ‘인력운영비’ 편성 당시의 현원과 인사이동, 휴직·복직·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자 수 차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2.5%, 197억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441억원, 2021년 421억원에 이어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인력 수급 계획, 급여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살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재무국의 2022회계연도 중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총 8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5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집행.불용>** (단위 : 천원, %)

사업명	통계목	본예산	추경 예산	예비비 사용	변경 사용	예산 현액	집행 잔액
<b>합계</b>		2,360,263,471	259,824,943	135,179	269,117	2,620,492,710	31,288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07-07 연금지급금	110,057	76,800	135,179	0	322,036	7,941
국고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0	32,930	0	0	32,930	325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802-03 기타반환금등	15,430,378	32,290	0	0	15,462,668	209
재정보전금	308-05 자치구기타자원조정비	1,866,943,000	92,131,763	0	0	1,959,074,763	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306-01 출연금	2,636,716	2,368,712	0	0	5,005,428	0
국고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590	3,041	0	0	3,631	17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01-12 기타보상금	0	126,087	0	269,117	395,204	22,797
시세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475,142,730	165,053,320	0	0	640,196,050	0

-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의 사용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지양되어야할 예산 운영 형태로써, 두 번에 걸친 예산편성에도 집행잔액을 방생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